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본인은 귀 클럽의 취지와 뒷면 약정서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회할 것을 신청합니다.

회원구분					회원번호						
성명	(한글)			(한자)			남·여	사진  (3매)			
현주소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근무처				직위				전화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타클럽소속 및 경력				핸디				입회금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직장 및 직위							전화			
	소속							성명	인		
	직장 및 직위							전화			

20 年 月 日

신청인 :



(주)창원컨트리클럽 귀중

# 약 정 서

1. 입 회 : 본 클럽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2. 입 회 금 :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최초발행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 신청에 의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반환으로 인한 전체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회원 대표기구인 이사회에서 조정,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시 회사에서 정한 제요금을 지불해야하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 남은 경기가 9홀 이상일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입장료의 1/2를 환불한다.
4. 회원이 클럽의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와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골프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때는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제명(회원권 반환)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본 클럽의 경영악화로 파산할 위기에 도달했을 때 회사는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입회 보증금으로 거치되어 있는 원금을 환불하고 회원증을 회수할 수 있다.

아래 신청인은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서명으로 약정한다.

년 월 일

신청회원 : \_\_\_\_\_ 서 명 : \_\_\_\_\_ (인)

보증인 : \_\_\_\_\_ (인) \_\_\_\_\_ (인)

(주)창원컨트리클럽 귀중